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30호
2017. 10. 10.(화)

서울특별시

목 차

◈ 고 시

제2017-355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2
제2017-3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제2017-360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 변경) ····· 4
제2017-362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18
제2017-363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 21

◈ 공 고

제2017-2089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 29
제2017-20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9

◈ 구 고 시

제2017-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화랑마을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중랑구) ····· 32
제2017-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용마폭포공원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중랑구) ····· 36
제2017-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법만사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중랑구) ····· 40
제2017-8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금천구) ····· 46
제2017-1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 46

◈ 사업소고시

제2017-1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9
제2017-1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9
제2017-19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0
제2017-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0
제2017-1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

◈ 기 타

제2017-202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52
제2017-20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52
제2017-204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53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5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5호(2017.8.17.)로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정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결정(변경)도 상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경계 착오에 따른 정정
   ※ 이 외 정정사항은 없음

2.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아래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4)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638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정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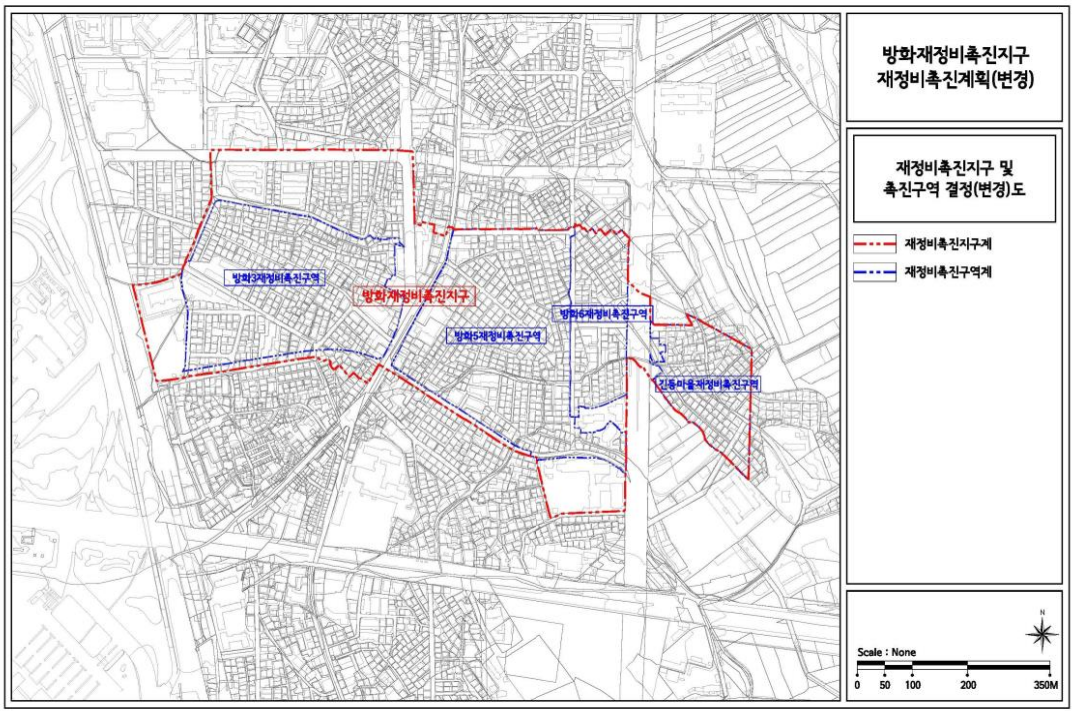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결정(변경)도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김동마을재정비촉진구역
Scale : None
0 50 100 200 350M

<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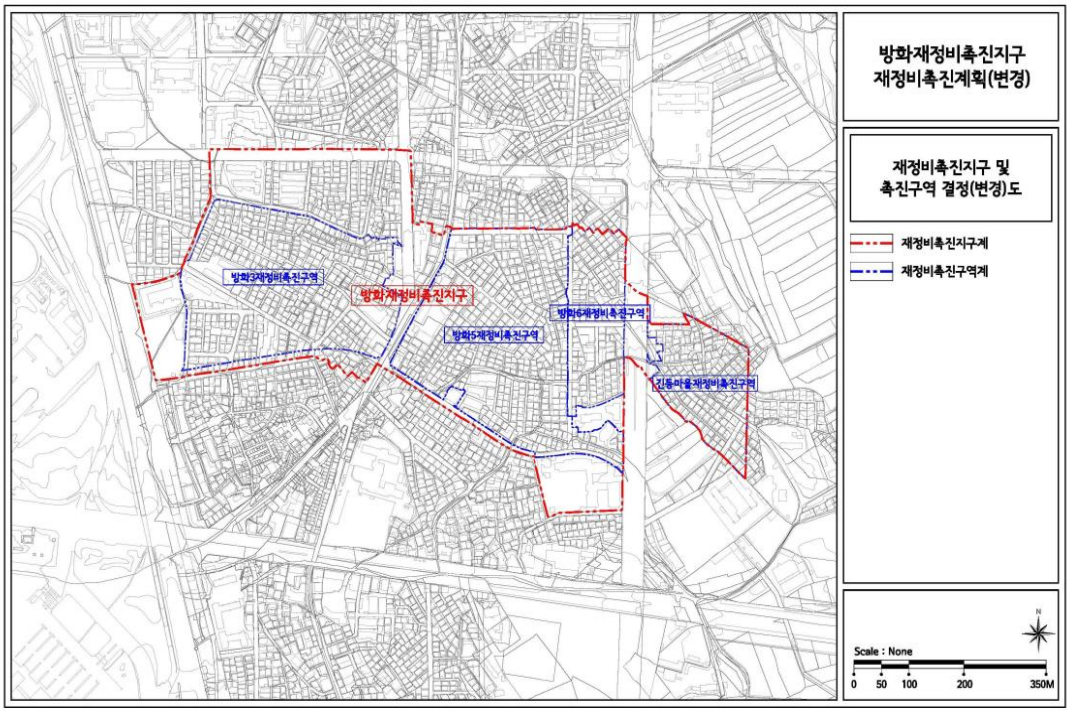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결정(변경)도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김동마을재정비촉진구역
Scale : None
0 50 100 200 35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71.8.6.)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시고시 제63호('91.3.19.)로 최초 결정, 서초구고시 제8호('97.2.14.)로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공공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청사 확대 및 공원 선형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도시자연 공원	강남구(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일대, 서초구	5,029,258	-	5,029,258	건고 제465호 ('71.8.6)	선형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서초구 내곡동 일원	618,616	증) 4,960	623,576	서고63호 ('91.3.19)	

   다.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바와 같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9)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2155-6785)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

(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같은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 18,988인/6,460호(기정) → 19,657인/6,683호(변경)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460	증)223	6,683	18,988	증) 669	19,657	※세대(호)당 인구수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촉진구역	소 계	4,813	증)223	5,036	12,997	증) 669	13,666	
	40㎡이하	337	증) 17	354	910	증) 51	961	
	40~50㎡	332	증) 16	348	897	증) 48	945	
	50~60㎡	945	증)648	1,593	2,552	증)1,944	4,496	
	60~85㎡	2,477	감)386	2,091	6,688	감)1,158	5,530	
	85㎡초과	722	감) 72	650	1,950	감) 216	1,734	
존치지역		1,647	-	1,647	5,991	-	5,991	

※ 변경사유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 촉진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부합하는 계획
   : 공원확보기준 (기정) 50,218.13㎡ → (변경) 52,353.88㎡
    ※ 변경사유 : 공원녹지확보면적 합산값 기재 오류에 대한 정정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 용적률 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변경내용	증감	
신림2구역	계획용적률(%)	242.40%	251.57%	증)3.78%	

※ 변경사유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높이 계획(주거유형별 건축면적 및 비율)

구분		저층		중층		중저층		고층		주거동수	초고층		합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신림2구역	기정	1,043.3	11.0	632.6	6.7	1,675.9	17.7	7,790.3	82.3	17	-	-	9,466.2	100.0
	변경	1,425.407	14.17	801.037	7.96	-	-	7,835.261	77.87	20	-	-	10,061.705	100.0

※ 변경사유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 임대주택 공급계획

- 공급비율 변경 : 17% → 15%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제2015-148호(2015.05.28.) 반영

○ 주택규모별 공급계획

규모(전용면적)	계획							
	촉진구역 계		1구역		2구역		3구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0㎡이하	337	354	202	-	93	110	42	-
40~50㎡	332	348	202	-	88	104	42	-
50~60㎡	154	126	101	-	39	11	14	-
계	823	828	505	-	220	225	98	-

※ 변경사유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기타 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신림1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나. 신림2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역구분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공 동 이용시설	관리사무소	468.09	감) 108.80	359.29	3개소
		주민공동시설	3,084.33	감) 726.35	2,357.98	
		문고	268.39	증) 91.97	360.36	
		보육시설	296.40	증) 376.64	673.04	1개소
		경로당	208.44	증) 296.13	504.57	1개소
		경비실	-	증) 118.63	118.63	5개소
		어린이놀이터	-	증) 1,669.99	1,669.99	
		주민운동시설	-	증) 939.12	939.12	

※ 변경사유 : 서울시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결과 반영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95,795.2	2-1	35,201.90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91,383.23	공동주택	21 이하	260.0	22/28
			2-2	12,652.00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26,639.65	공동주택	20 이하	222.0	16/18
			2-3	4,876.00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11,092.07	공동주택	26 이하	228.0	14/15
			2-4	1,156.00	관악구 신림동 320-33번지 일대	1,732.98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00이하	-
			2-5	1,335.00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920.00	공공청사	60 이하	200이하	-
			2-6	1,284.00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2,568.00	사회복지 시설	60 이하	200이하	-
			2-7	1,802.10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4,139.83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30이하	-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8%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1% 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1,272세대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변경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95,795.2	2-1	35,201.90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90,459.53	공동주택	22 이하	260.0	23/28
			2-2	12,652.00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31,018.70	공동주택	25 이하	246.0	17/18
			2-3	4,876.00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12,160.01	공동주택	26 이하	250.0	14/15
			2-4	1,156.00	관악구 신림동 320-33번지 일대	2,312.0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00이하	–
			2-5	1,335.00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920.00	공공청사	60 이하	200이하	–
			2-6	1,284.00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2,568.00	사회복지 시설	60 이하	200이하	–
			2-7	1,802.10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4,144.83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3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8%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1% 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1,495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변경사유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건립 위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내	11,599.55	33,366.52	공 급 : 21,738.20	93(7.3%)	증)17	110(7.4%)	40㎡이하	
			공 유 : 776.49	88(6.9%)	증)16	104(7.0%)	40~50㎡이하	
			주차장 : 10,851.83	39(3.1%)	감)28	11(0.7%)	50~60㎡이하	
			계 : 33,366.52	220(17.3%)	증)5	225(15.1%)	계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변경사유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 변경 및 임대주택 연면적 산정시 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 반영에 따른 변경

다.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라. 신림4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 변경사항 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38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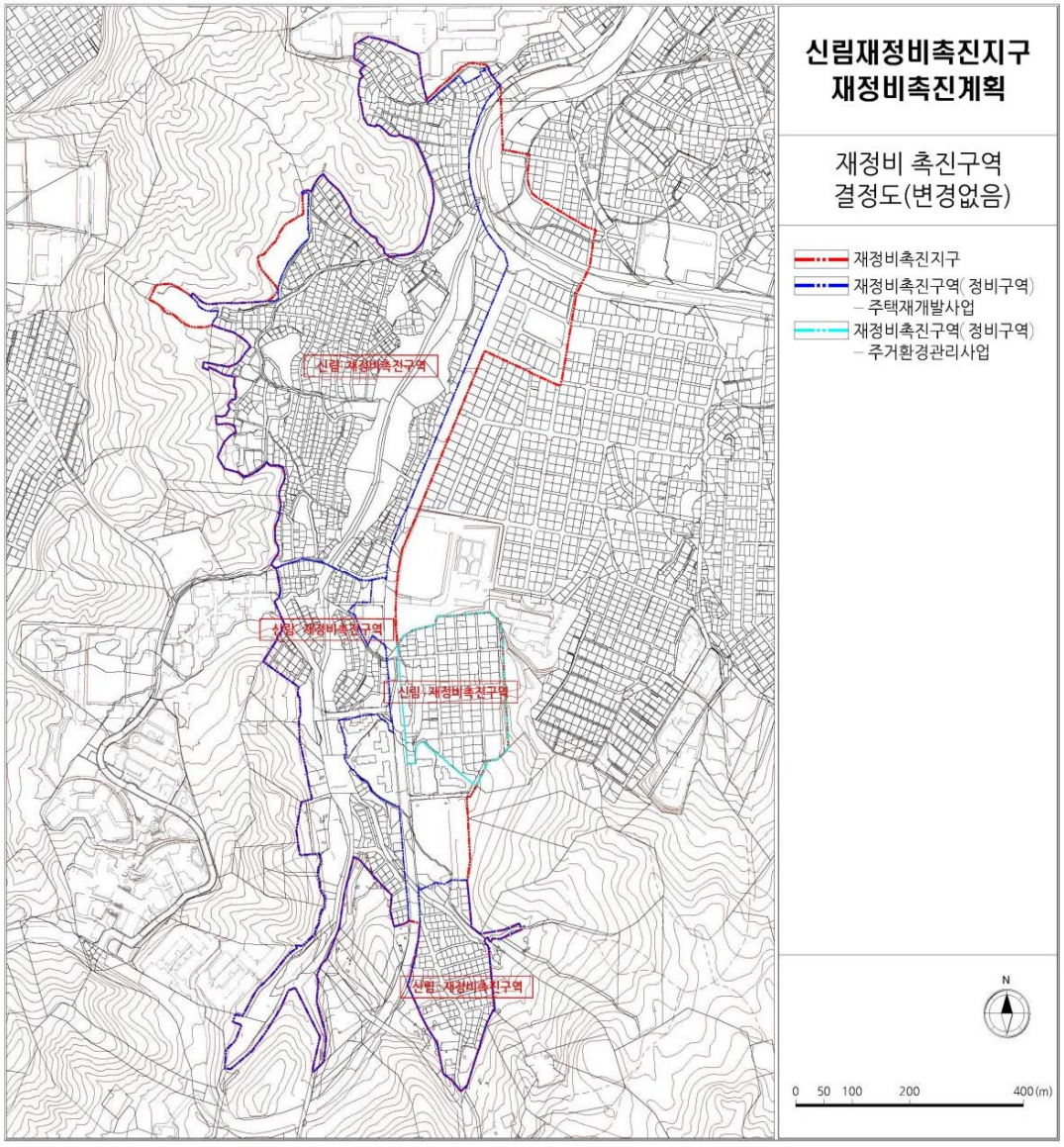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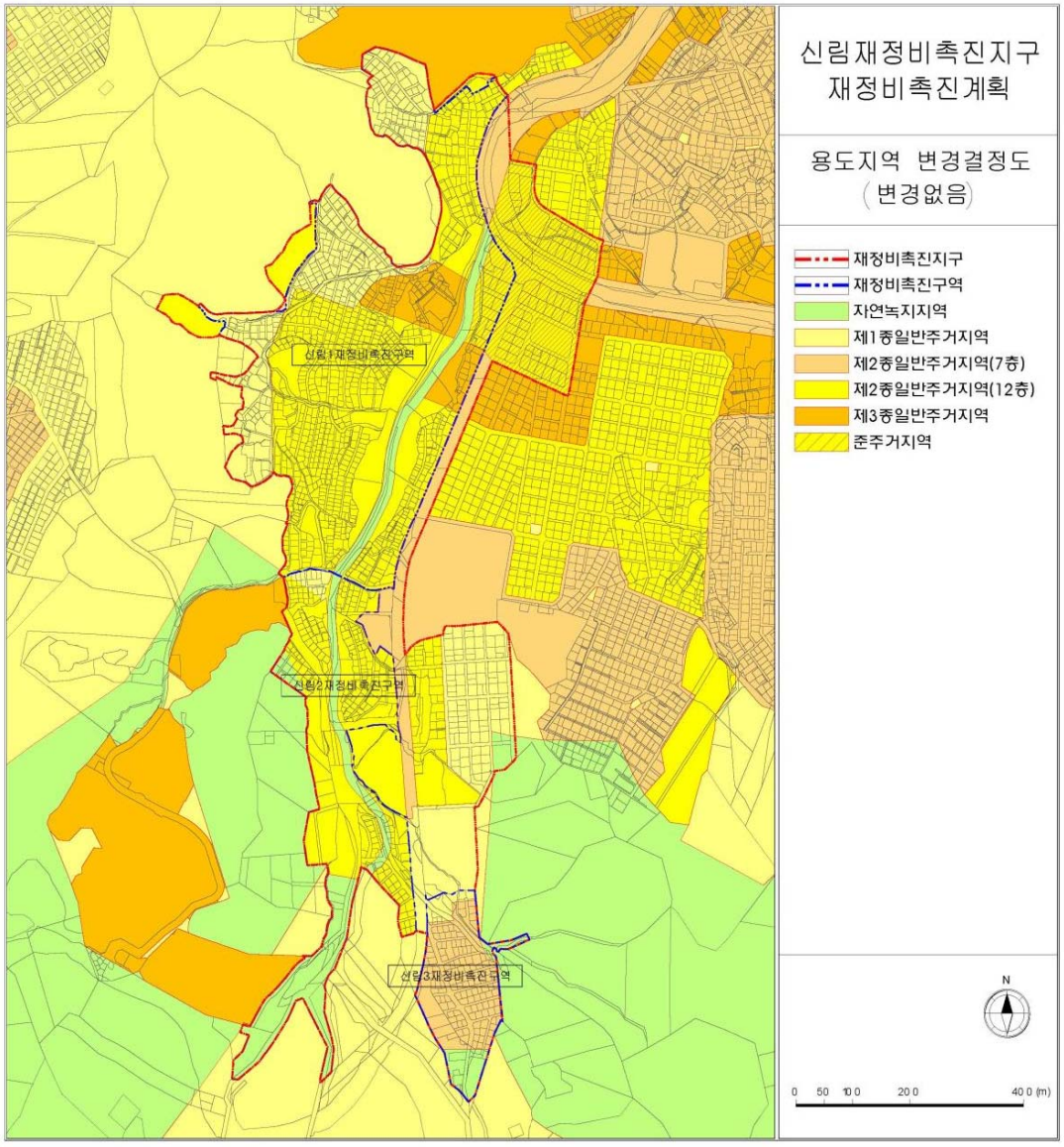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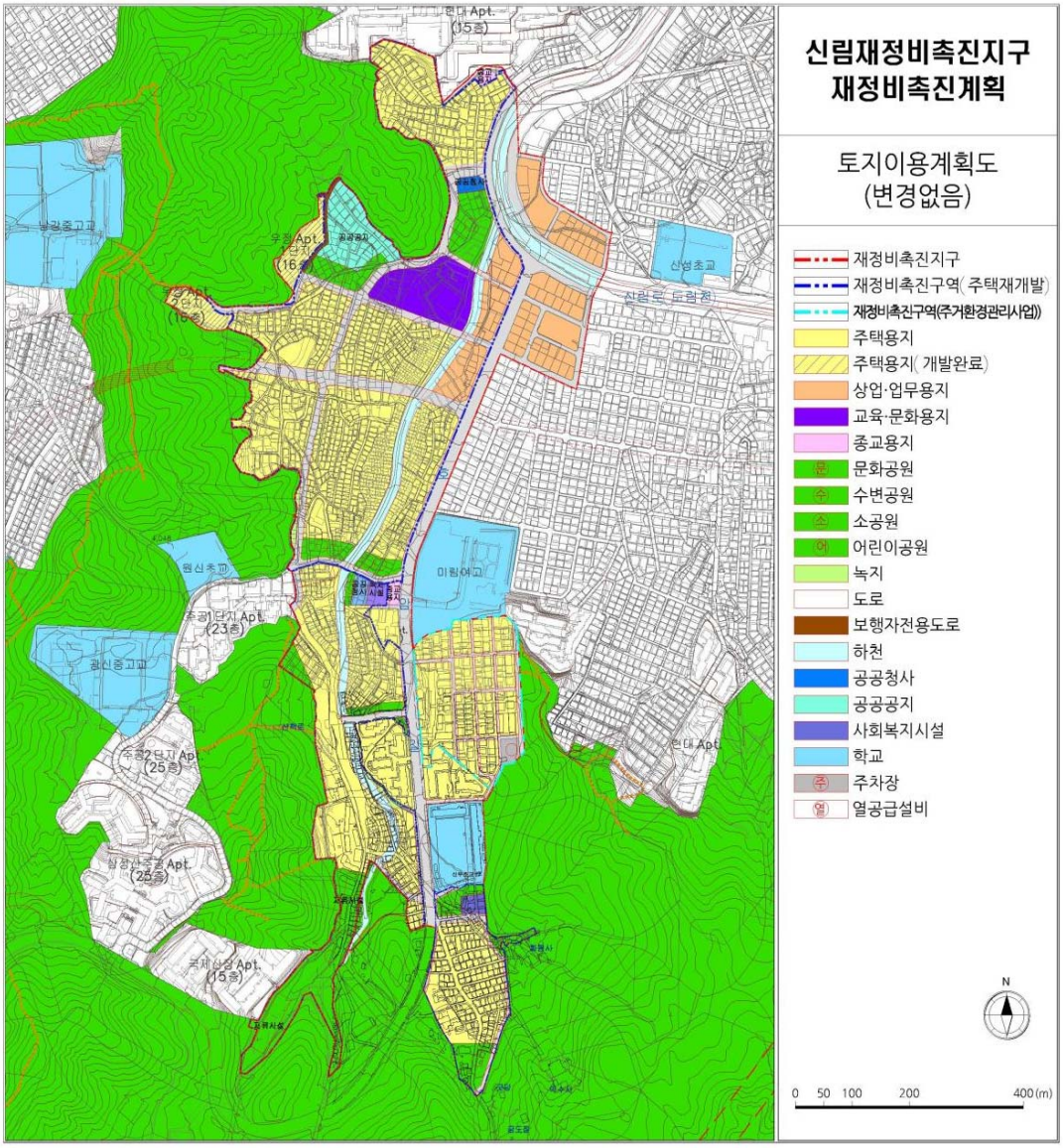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신림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정비구역결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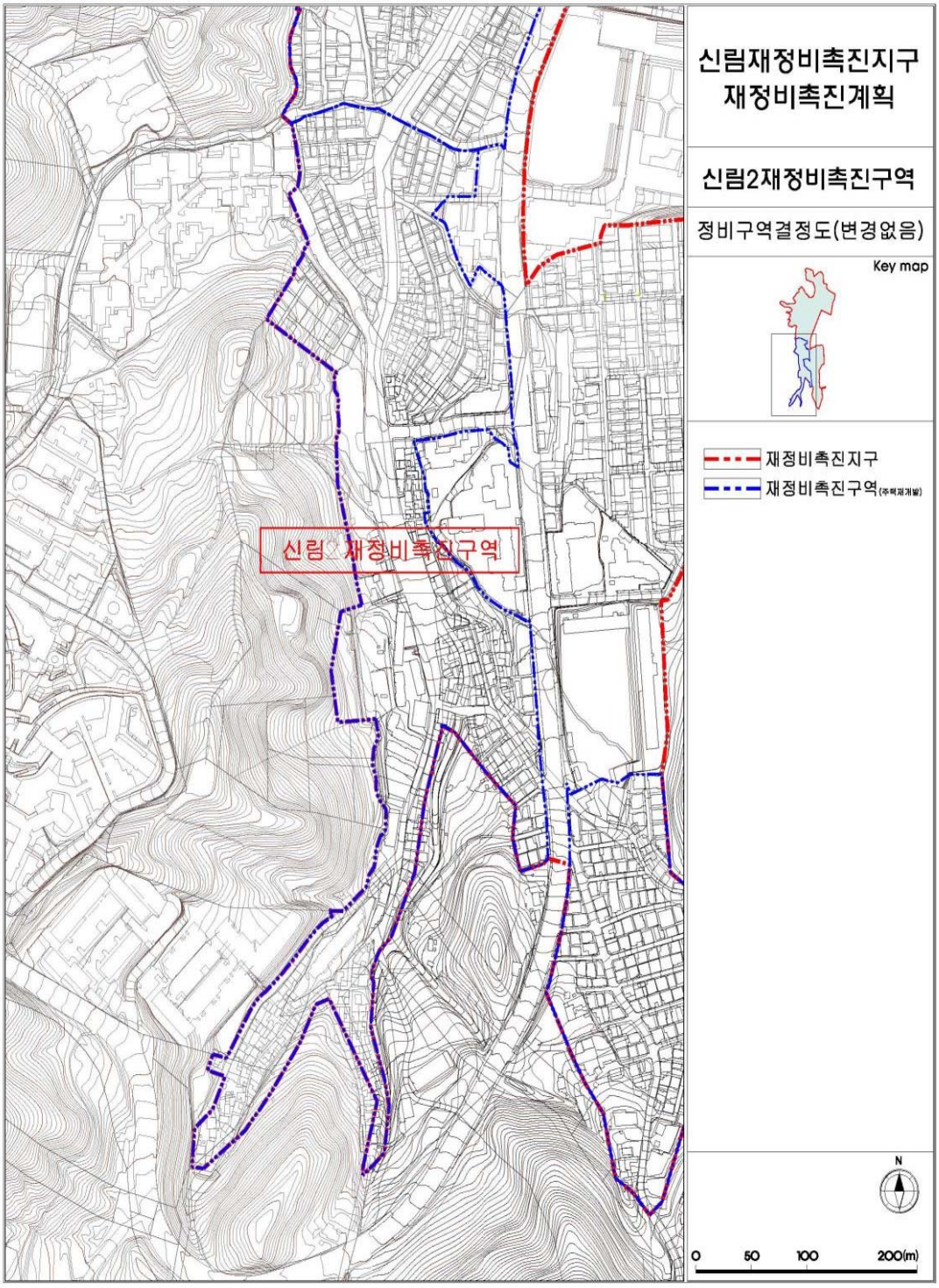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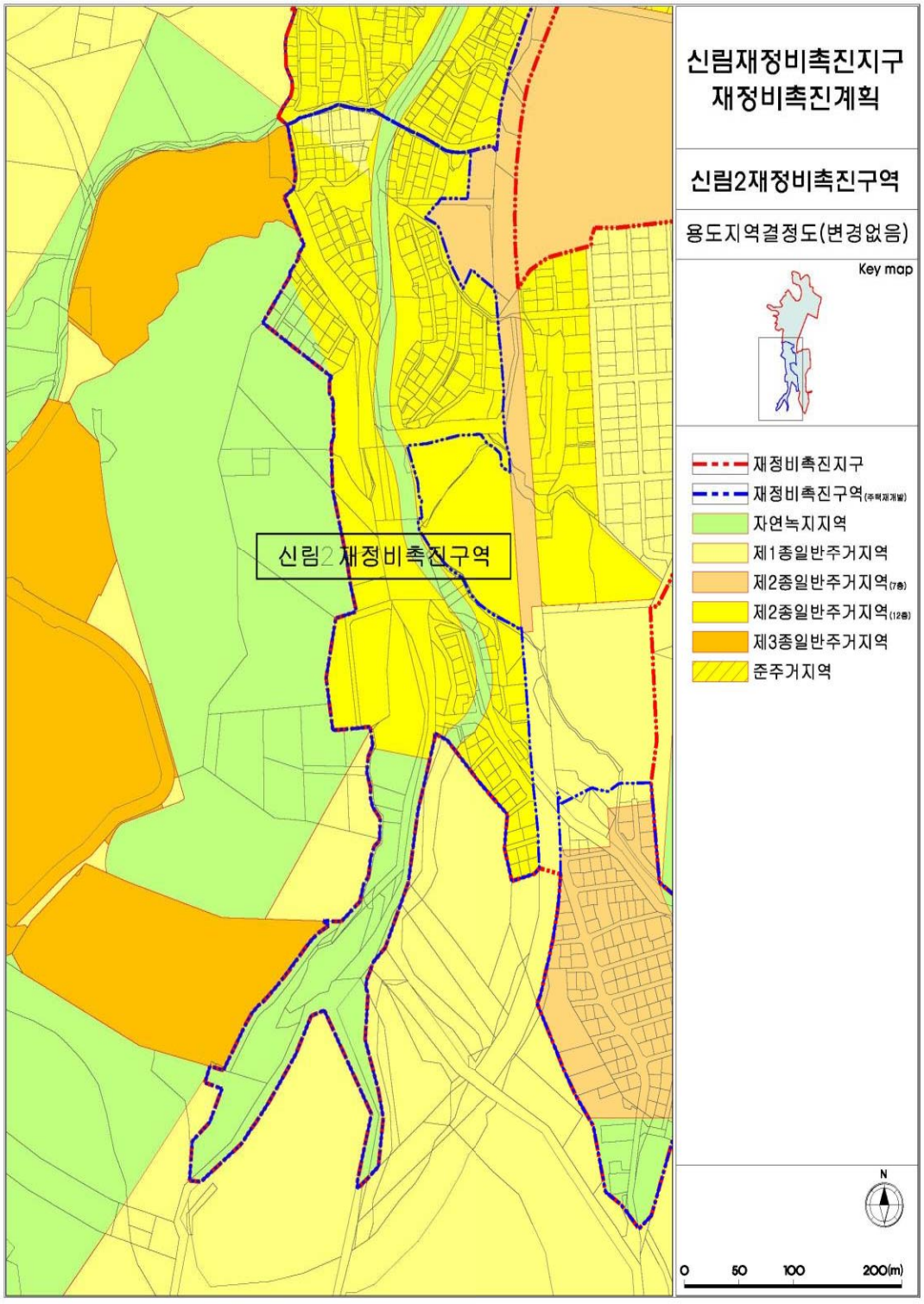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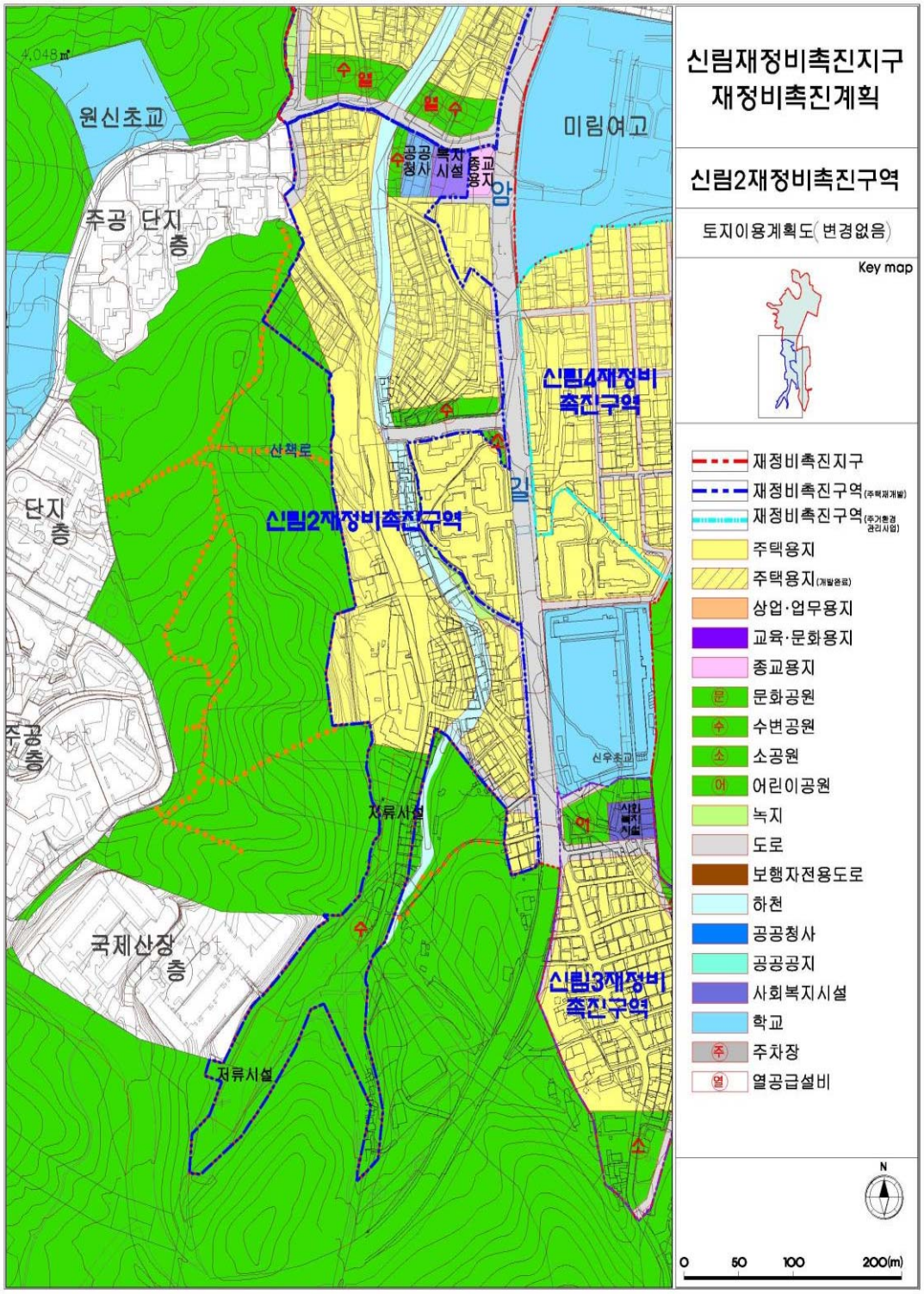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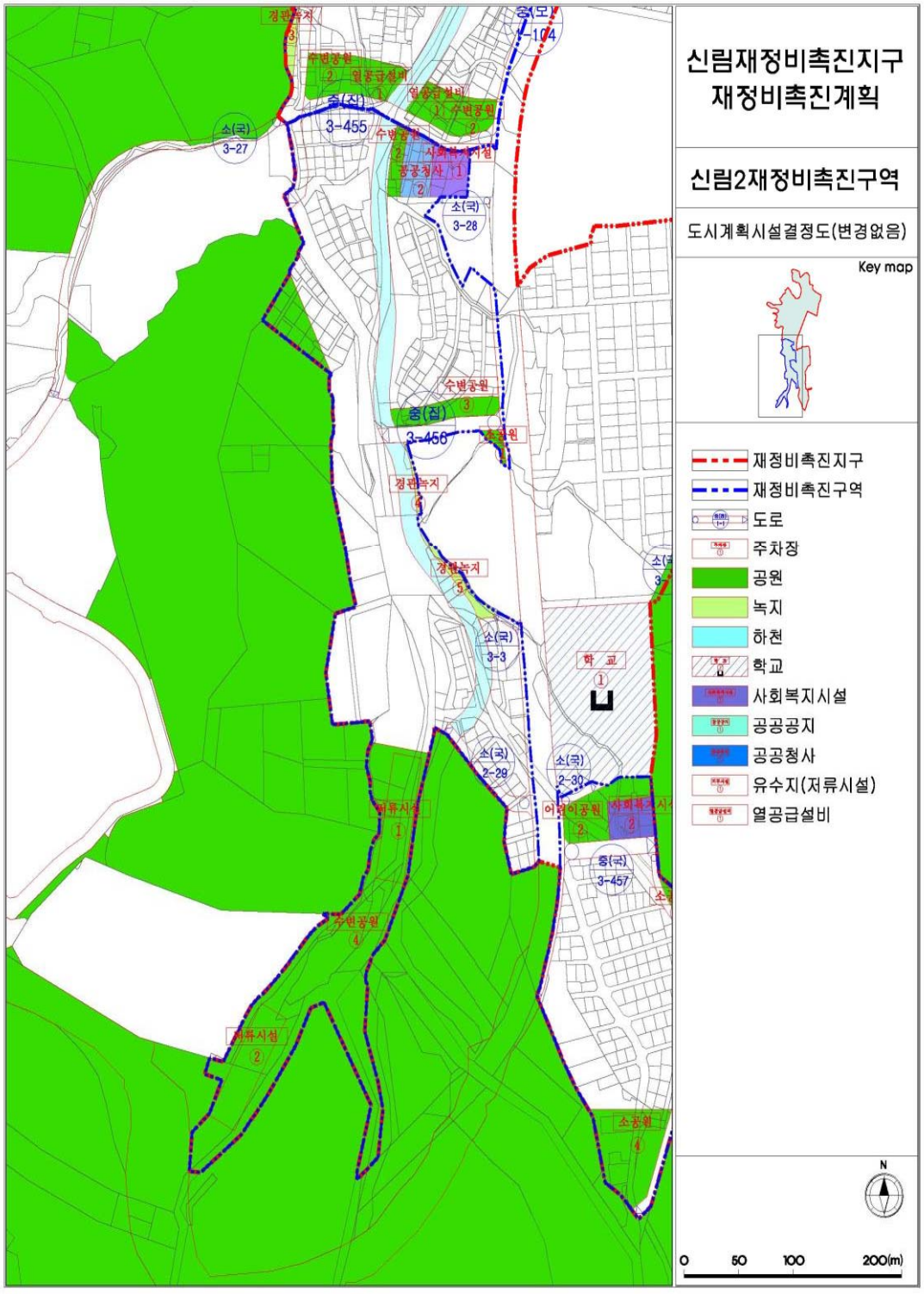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2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table>
<tr><th>연번</th><th>구역해제 현황</th></tr>
<tr><td>1</td><td>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table>
<tr><th>구분</th><th>구역번호</th><th>동명</th><th>지번</th><th>면적(㏊)</th><th>계획용적률</th><th>건폐율</th><th>층수</th><th>추진단계</th><th>주택유형</th><th>예정구역지정일</th></tr>
<tr><td>기정</td><td>5</td><td>정릉동</td><td>410-10</td><td>2.8</td><td>190%</td><td>60%</td><td>7</td><td>1</td><td>단독</td><td>2013.11.28.
(서고시 2013-393호)</td></tr>
<tr><td>변경</td><td colspan="10">해 제</td></tr>
</table>
□ 정비구역 변경(해제)
<table>
<tr><th>구분</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사업방식</th><th>면 적(㎡)</th><th>정비구역(변경)지정일
(고시번호)</th></tr>
<tr><td>기정</td><td>정릉5주택재건축정비구역</td><td>성북구 정릉동
410-10 일대</td><td>주택재건축</td><td>66,345.2</td><td>2011.8.18.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1-59호)</td></tr>
<tr><td>변경</td><td colspan="5">해 제</td></tr>
</table>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table>
<tr><th>결정구분</th><th colspan="2">구 분</th><th>면적(㎡)</th><th>구성비(%)</th><th>비고</th></tr>
<tr><td rowspan="10">기정</td><td colspan="2">합 계</td><td>66,345.2</td><td>100.0</td><td></td></tr>
<tr><td rowspan="5">정비기반
시 설</td><td>소 계</td><td>14,743.4</td><td>22.2</td><td></td></tr>
<tr><td>도 로</td><td>9,206.7</td><td>13.9</td><td></td></tr>
<tr><td>어린이공원</td><td>3,321.5</td><td>5.0</td><td></td></tr>
<tr><td>주차장</td><td>1,403.6</td><td>2.1</td><td></td></tr>
<tr><td>공공공지</td><td>811.6</td><td>1.2</td><td></td></tr>
<tr><td rowspan="3">택 지
(획지)</td><td>소 계</td><td>51,601.8</td><td>77.8</td><td></td></tr>
<tr><td>획지1</td><td>39,904.3</td><td>60.2</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r>
<tr><td>획지2</td><td>11,697.5</td><td>17.6</td></tr>
<tr><td>변경</td><td colspan="5">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구역해제 현황</th></tr>
<tr><td>1</td><td>○ 건축시설계획(폐지)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계획</th><th>예정 법적상한</th></tr>
<tr><td>기정</td><td>정릉5 주택재건 축정비 구역</td><td>66,345.2</td><td>획지1 획지2</td><td>51,601.8</td><td>성북구 정릉동 410-10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td><td>31 이하</td><td>214.75 이하</td><td>219.02 이하</td><td>60m이하 최고18층 평균15층 이하</td><td></td></tr>
<tr><td>변경</td><td colspan="11">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td></tr>
</table></td></tr>
</tab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2. 지형도면(해제) : 첨부 도면과 같음

3.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실효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
   ○ 실 효 일 : 고시일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와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정비구역 해제 도면

□ 정릉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위치도(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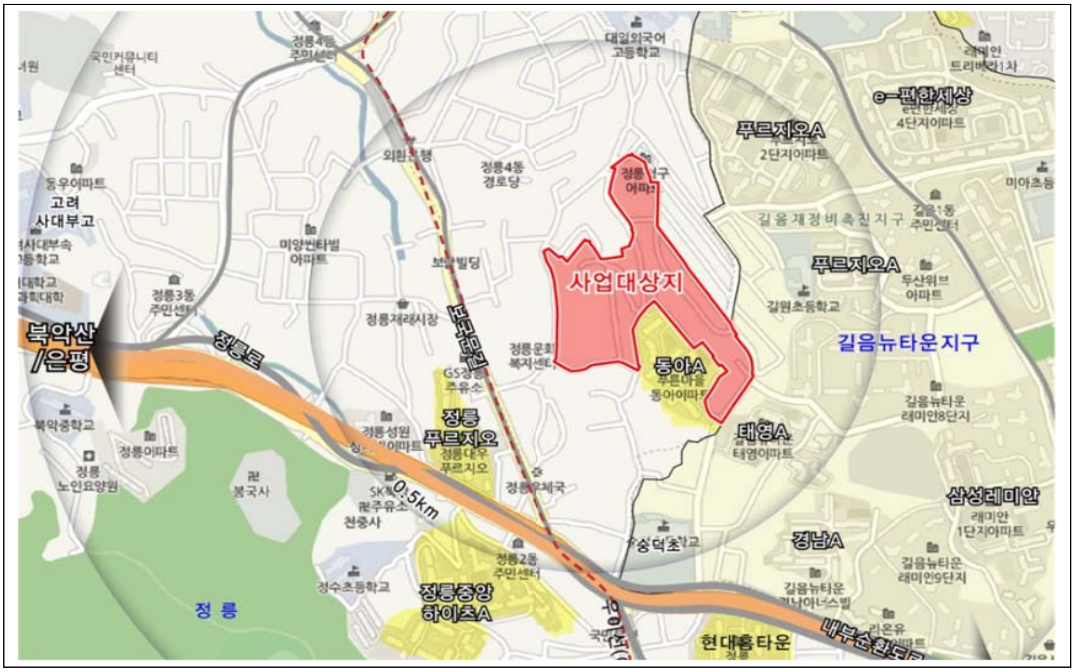

○ 정비구역도(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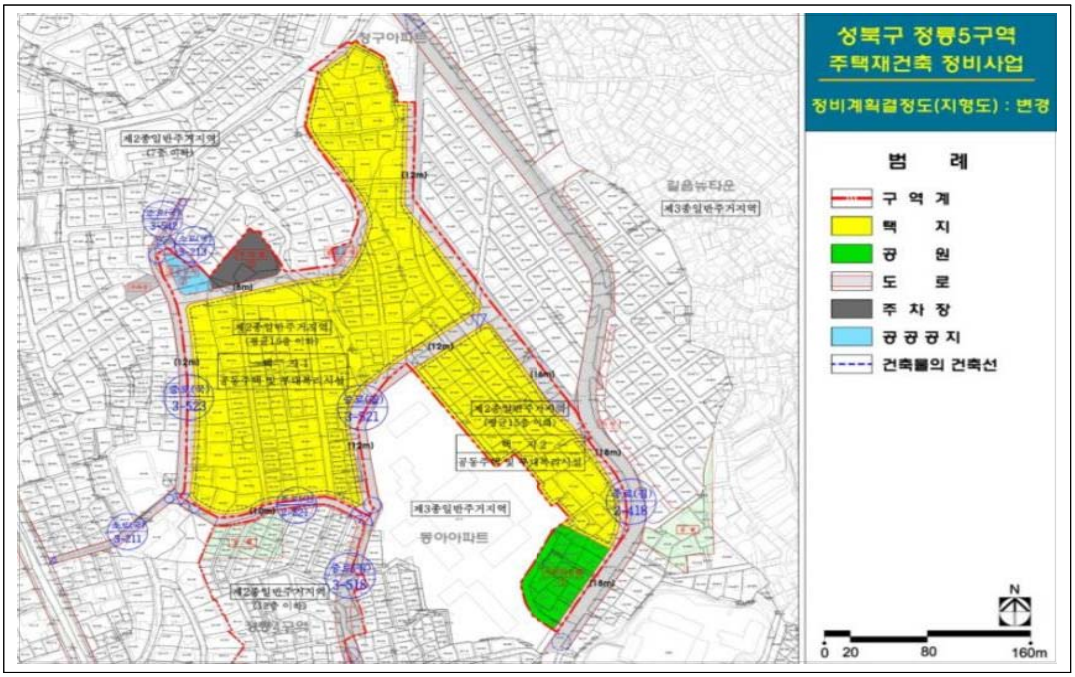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3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 일대 등 3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규정에 의거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 구역
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table>
<tr><th>연번</th><th>구역해제 현황</th></tr>
<tr><td>1</td><td>

□ 정비예정구역 (해제)

<table>
<tr><th>구분</th><th>구역 번호</th><th>동명</th><th>지번</th><th>면적 (ha)</th><th>용적률 (%)</th><th>층수</th><th>건폐율 (%)</th><th>추진 단계</th><th>정비 유형</th><th>예정구역지정일 (고시일)</th></tr>
<tr><td>기정</td><td>22</td><td>충정로동</td><td>281-18</td><td>0.9</td><td>210</td><td>-</td><td>50</td><td>1</td><td>전면 개발</td><td>2004.06.25. (서고시2004-204호)</td></tr>
<tr><td>변경</td><td colspan="10">해 제</td></tr>
</table>

□ 정비구역 (해제)

<table>
<tr><th>구분</th><th>구역의 명칭</th><th>위 치</th><th>면 적(㎡)</th><th>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th></tr>
<tr><td>기정</td><td>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td><td>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 일대</td><td>8,369.3</td><td>2009.05.21. (서고시2009-205호)</td></tr>
<tr><td>변경</td><td colspan="4">해 제</td></tr>
</table>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명 칭</th><th>면 적</th><th>비 율(%)</th><th>비 고</th></tr>
<tr><td colspan="2"></td><td>합계</td><td>8,369.3</td><td>100.0</td><td rowspan="7"></td></tr>
<tr><td rowspan="5">기정</td><td rowspan="3">정비기반 시설 등</td><td>소 계</td><td>1,088.0</td><td>13.0</td></tr>
<tr><td>소 공 원</td><td>579.0</td><td>6.9</td></tr>
<tr><td>역사공원</td><td>509.0</td><td>6.1</td></tr>
<tr><td rowspan="2">택 지</td><td>소 계</td><td>7,281.3</td><td>87.0</td></tr>
<tr><td>택 지</td><td>7,281.3</td><td>87.0</td></tr>
<tr><td>변경</td><td colspan="5">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환원)</td></tr>
</table>

</td></tr>
</table>

연번	구역해제 현황

○ 건축시설계획(폐지)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기정	택지	7,281.3	충정로3가 281-18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 이하	259% 이하	49m (최고17층)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90세대(일반 190세대, 임대 0세대) - 85㎡ 이하 : 190세대(100%) - 85㎡ 초과 : 없음				
기정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환원)						

2

□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정비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일)
기정	26	동선1동	74-15	1.7	190	12층 이하	60	3	수복 (전면)	20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동선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돈암동 74-15 일대	17,235	2009.12.10. (서고시2009-491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계	17,235.0	100.0	
기정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108.0	23.84	
		도 로 1	556.0	3.23	
		도 로 2	1,690.0	9.81	
		도 로 3	168.0	0.97	
		도 로 4	332.0	1.93	
		도 로 5	312.0	1.81	
		공 원	1,050.0	6.09	

연번	구역해제 현황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택 지	소 계	11,575.8	67.16	
		택 지 1	10,715.8	62.17	
		택 지 2	209.0	1.21	
		택 지 3	166.0	0.96	
		택 지 4	485.0	2.82	
	학교용지	소 계	1,551.2	9.00	
		학교용지1	483.0	2.80	
		학교용지2	1,068.2	6.20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환원)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치	건 축 시 설 계 획				
			면적(㎡)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높이)	주된용도
기정	택지 1	돈암동 74-15일원	10,715.8	45% 이하	220% 이하	평균16층이하 (50m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택지 2	동선동3가 259-7일원	209.0	관련법규에 의함			보류지
	택지 3	돈암동 83-2일원	166.0				보류지
	택지 4	돈암동 83-129일원	485.0				존 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92세대 - 85㎡ 이하 : 166세대(86.46%) - 85㎡ 초과 : 26세대(13.54%) □ 임대주택 : 임대없음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령에 의함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환원)						

□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일)
기정	5	성북2동	3-38	6.8	170	7층 이하	60	2	수복 (전면)	20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해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성북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성북동 3-38 일대	68,339㎡	2008.08.21. (서고시2008-284호)
변경	해 제			

연번	구역해제 현황
3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합계	68,339.0	100.00	
기정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058.3	19.1	
		도 로	7,714.7	11.3	
		공 원	5,343.6	7.8	
	택 지	소 계	55,280.7	80.9	
		택 지 1	53,566.7	78.4	
		택 지 2	508.6	0.7	
		택 지 3	1,205.4	1.8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환원)				

○ 건축시설계획(폐지)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높이)
기정	공동주택	55,280.7	성북동 3-3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45%이하	175%이하	11층이하 (33m이하)
	종교용지	508.6	성북동 1-152 번지 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4층 이하
	종교용지	1,205.4	성북동 163-2번지 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4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0%미만(계획:14.99%)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계획:85.01%) · 임대주택 : 건립세대수의 17%이상(계획:17.05%)				
	건축물 층수완화		평균 11층 이하 적용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의함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2. 위치도 및 지형도면(해제) : 붙임과 같음

3. 정비(예정)구역 실효사유 및 실효일

○ 실효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 실 효 일 : 고시 게재일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232) 및 각 자치구 해당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 열람부서

구역명	구 별	열람부서	연락처	주 소
충정로1구역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330-1556	서대문구 연희로 248
동선4구역	성북구	주거정비과	2241-2873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3구역	종로구	주거정비과	2241-2875	성북구 보문로 168

붙임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각1부.

붙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3개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2번지 일대(충정로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위 치 도

□ 정비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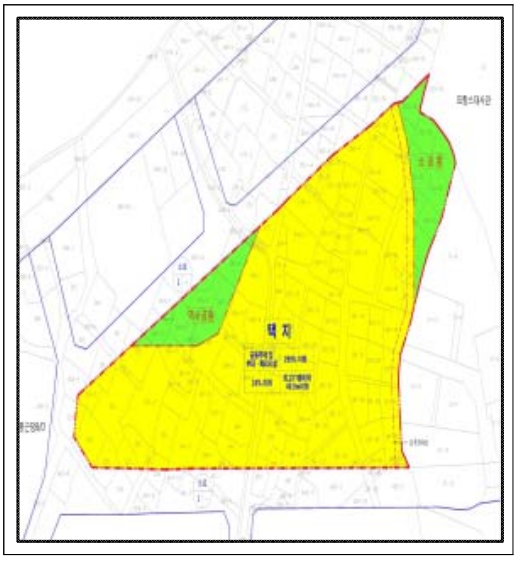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 결정도(해제)

2. 성북구 돈암동 74-15번지 일대(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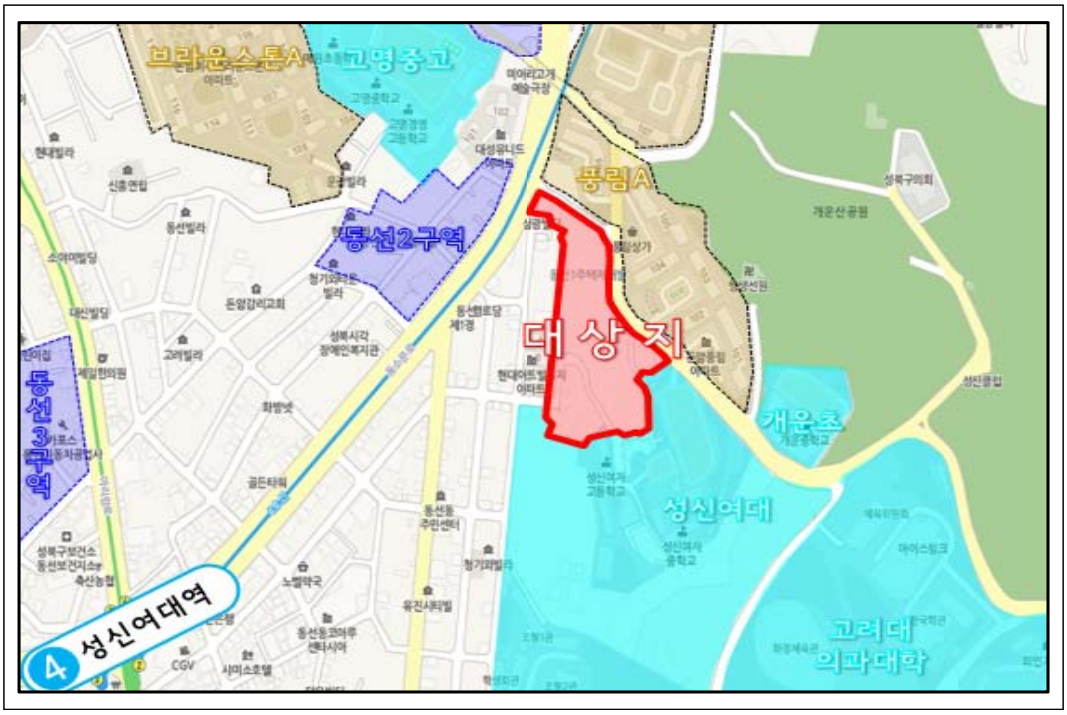

□ 정비계획도(기정)

□ 정비(예정)구역 결정도(해제)

3.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성북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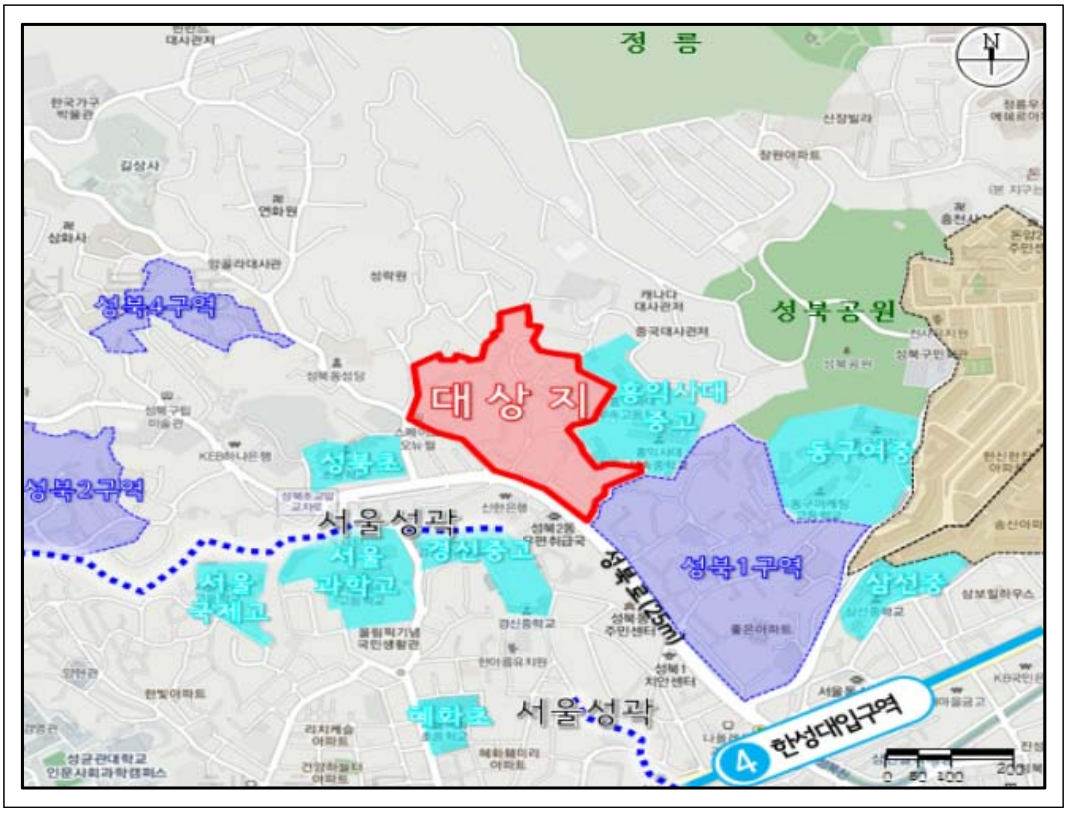

□ 정비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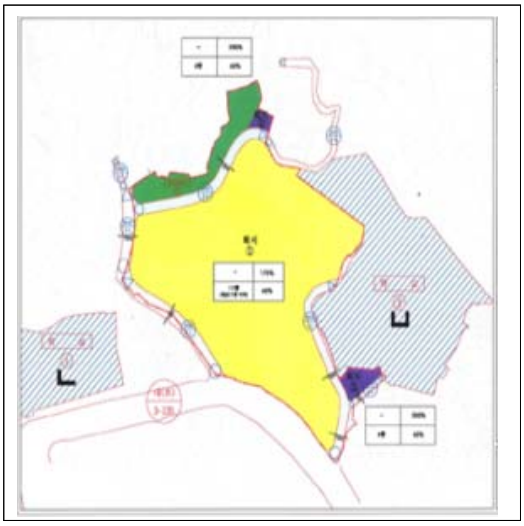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 결정도(해제)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89호

설계업 ·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1종 (E-2-522) 전문감리업 (S-2-513)	㈜한미이앤씨 (110111-5013935)	정수영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06, 2층 (노량진동)	2017.09.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익기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8길 ** (답십리동)	일시: 2017.07.07. 16:29 장소: 마포구 상암동 증산로 석유비축기지앞 내용: 축하중 11.7톤(1.7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8.28. 납기일: 2017.10.31.
정하성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5길 **, ***호 (화곡동, **빌)	일시: 2017.07.28. 15:32 장소: 은평구 진관동 통일로구파발사거리 (흥창사앞) 내용: 축하중 11.5톤(1.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8.28. 납기일: 2017.10.31.
이현제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3, ***동 ***호 (하안동, **아파트)	일시: 2017.08.02. 10:29 장소: 은평구 갈현동 갈현삼성아파트앞 내용: 축하중 11.2톤(1.2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8.28. 납기일: 2017.10.31.
한기종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60번길 **, ***동 ****호 (예산읍, ****아파트)	일시: 2017.08.05. 06:16 장소: 서대문구 냉천동 서대문역정거장앞 내용: 길이 16.97톤(0.27톤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8.28. 납기일: 2017.10.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용철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63길 ** ***동 ****호 (이문동, *******아파트)	일시: 2017.05.18. 06:54 장소: 서대문구 남가좌동 연희IC (32톤) 내용: 총중량 36.55톤(4.5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6.27. 납기일: 2017.08.31.
김보현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8길 **	일시: 2017.06.05. 15:07 장소: 은평구 갈현동 갈현삼성아파트앞 내용: 축하중 11.3톤(1.3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6.27. 납기일: 2017.08.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17-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화랑마을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봉화산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으며,
2.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호(1997.02.13)로 최초 결정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1호(2016. 7. 28)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3. 봉화산근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묵동 산46-1번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16(2017.3.16)호로 인가고시 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감정평가 결과 사업면적에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산46-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봉화산근린공원조성(화랑마을뒤)
  3) 사업의 면적 : 당초 10,000㎡, 변경 9,410㎡ (감 5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중랑구청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5)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등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별표 4의 제10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 서울특별시의 사무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매수)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 송창선(☏02-2094-2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봉화산근린공원 조성(화랑마을뒤)

□ 사업 시행자 : 중랑구청장

【당 초】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94,386	10,000						
1	중랑구 묵동 산46-1	임야	94,386	10,000	한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4				
					이	하 여 백				

【변 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94,386	9,410						
1	중랑구 묵동 산46-1	임야	94,386	9,410	한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4				
					이	하 여 백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봉화산근린공원 조성(화랑마을뒤)

□ 사업 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이	하	여	백			

◈ 중랑구고시 제2017-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용마폭포공원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용마도시자연공원은 내무부고시 제413호(1958. 2.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고 변경 결정사항은 서고 제353호(1998. 10. 9.)로 최종 고시되었으며,
2.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건고 제491호(1982. 12. 30.)로 최초로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4호(2013. 9. 12.)로 최종 결정(변경) 고시되었습니다.
3. 용마도시자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산75번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35호(2017.5.25)호로 인가고시 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감정평가 결과 사업면적에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7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용마폭포공원뒤)
3) 사업의 면적 : 당초 1,700㎡, 변경 2,430㎡ (증 7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중랑구청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5)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등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별표 4의 제10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 서울특별시의 사무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매수)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 송창선(☏02-2094-2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용마폭포공원 뒤)

□ 사업 시행자 : 중랑구청장

【당 초】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48,281	1,700						
1	중랑구 면목동 산75	임야	48,281	1,700	유석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압구정 현대아파트 24동 1402호	김형주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2, 디엠씨파크뷰자이 126동 1601호	근저당권 지상권	
							광해명품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퇴계로 72, 남산에스케이리더스뷰 201호	근저당권 채무자	

【변 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48,281	2,430						
1	중랑구 면목동 산75	임야	48,281	2,430	유석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압구정 현대아파트 24동 1402호	김형주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2, 디엠씨파크뷰자이 126동 1601호	근저당권 지상권	
							광해명품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퇴계로 72, 남산에스케이리더스뷰 201호	근저당권 채무자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용마도시자연공원(용마폭포공원 뒤)

□ 사업 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이	하	여	백			

◈ 중랑구고시 제2017-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법만사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봉화산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으며,
2.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호(1997.02.13)로 최초 결정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1호(2016. 7. 28)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3. 봉화산근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산5-11번지 일대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41(2017.6.15)호로 인가고시 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감정평가 결과 사업면적에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산5-1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봉화산근린공원조성(법만사뒤)
3) 사업의 면적 : 당초 4,500㎡, 변경 3,915㎡ (감 58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중랑구청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5)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등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별표 4의 제10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 서울특별시의 사무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매수)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 송창선(☏02-2094-2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봉화산근린공원 조성(법만사뒤)

□ 사업 시행자 : 중랑구청장

【당 초】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8,071	4,500						
1	중랑구 중화동 산5-12	임야	3,122	2,372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2	중랑구 중화동 산5-11	임야	3,174	1,300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중랑구 중화동 산5-10	임야	1,785	828	김종덕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1-705				
					정석진	도봉구 창동 347, 주공아파트 314-903				

【변 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8,071	3,915						
1	중랑구 중화동 산5-12	임야	3,122	2,372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2	중랑구 중화동 산5-11	임야	3,174	715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중랑구 중화동 산5-10	임야	1,785	828	김종덕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1-705				
					정석진	도봉구 창동 347, 주공아파트 314-903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법만사뒤)

□ 사업 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이	하	여	백			

◈ 금천구고시 제2017-8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건설사업의 종류
   가. 주택건설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나. 주택건설사업의 명칭 : 독산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주체의 성명 : (주)광진주택건설 대표 김종수 외 3인
   나. 사업주체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8, 211호(논현동, 강남파라곤상가)
3. 사업시행 위치 및 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6-9호
   나. 대지면적 : 1,983.5㎡
   다. 건축연면적 : 6,207.95㎡
   라. 규모 및 용도 : 지하1층/지상6층, 8동,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80세대
   마. 구 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
4. 의제처리사항 : 건축허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강동구고시 제2017-1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47호(2013. 5.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7-1196호(2017. 9. 14.)로 열람 공고된「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둔촌동 105~105-3간
   - 금회(3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둔촌동 108-11, 강동구 둔촌동 108-12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의 명칭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125m
   - 금회(3차) 사업구간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20m
5.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6.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 까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수용 및 사용할 토지 · 물건 조서

□ 사 업 명: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3차)
□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둔촌동 108-11	330	24	대		김*연	서울 강동구 둔촌동 1**-1*				
					1/2	이*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동 1**4호(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시화지점)	근저당권	
2	둔촌동 108-12	60	43	대	1/2	홍*아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동 1**4호(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용도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둔촌동 108-11	건물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3		김*연	서울 강동구 둔촌동 1**-1*				
			계단		2							
		지장물	계단		1							
			창고	-	6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세방(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3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뱃길~ 서울복합발전소)	선박 1척 (기선 1척 부선 1척)	중량물 운송	2017.10.16. ~ 2017.10.25.	2017. 09.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2척 (기선1, 부선1)	정박대기	2017.09.26. ~ 2017.11.30.	2017. 09.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11척 (기선 8척, 부선 3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10.01. ~ 2017.10.31.	2017. 09.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18척 (기선 2척, 부선 16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10.09. ~ 2017.10.31.	2017. 09.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다음기술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0, 309호	서울시계 내 한강 (천호대교~광나루)	선박 1척 (고무보트)	광나루~천호역간 하상조사	2017.09.29.~ 2017.09.29.	2017. 9.28.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02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205-5, 205-7, 205-8, 232-30, 302-2, 303-3번지(총 6필지)
   - 면 적 : 영구 6,942㎡, 일시 1,3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 함상공원 조성
   - 내 역 :
     ○ 서울함 정박 1식, 부유식 구조물(안내센터, 고속정, 화장실) 1식
     ○ 기타 부대시설(전기, 통신 관로 등)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9.25.~2022.09.24.(허가일로부터 2017.1130.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0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84-2번지
- 면 적 : 6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 열수송관 보수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9.26.~2018.05.31.(2017.10.16.~2018.05.31.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04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07-9번지 등 5개소
   - 면 적 : 1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 열수송관 보수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9.26.~2018.05.31.(2017.10.16.~2018.05.31.까지)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